

##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중 "기획관리실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중 제1호의 "연리 7%"를 "연리 6.5%"로 하고, 단서조항을 삭제하며, 제2호의 "연리 8%"를 "연리 7.5%"로 한다.

제13조제1항중 "내무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조의2(관리자의 지정)① 생략 ② 관리자는 <u>기획관리실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2조의2(관리자의 지정)① <u>현행과 같음</u> ② <u>----- 기획조정실장 -----</u></p>
<p>제10조(용자조건)①용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하되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 <p>1. <u>상·하수도사업 및 댐주변사업 : 연리 7%. 다만,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.5%~7%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<u>여타사업 : 연리 8%</u></p> <p>② 생략 ③ 생략</p>	<p>제10조(용자조건)①----- -----</p> <p>1. <u>상·하수도사업 및 댐주변사업 : 연리 6.5%</u></p> <p>2. <u>여타사업 : 연리 7.5%</u></p> <p>② <u>현행과 같음</u> ③ <u>현행과 같음</u></p>
<p>제13조(기금운영계획)① 도지사는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계개시전에 미리 <u>내무부장관</u>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생략</p>	<p>제13조(기금운영계획)① ----- -----</p> <p>----- <u>행정자치부장관</u>의 -----</p> <p>② <u>현행과 같음</u></p>
<p>(<u>신 설</u>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중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